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2434 손해배상(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서정환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순일
변 론 종 결 2026. 4. 30.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5. 15.부터 2014. 2. 28.까지 서울 B구에서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7.경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당시 종이 문서로 작성되던 서식을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그 전자문서 내용을 양면 모니터를 통해 각 민원인과 공무원이 확인 하여 서명패드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알고리즘'(이하 '이 사건 알고리즘'이라 한다)을 고안하였다. 원고는 당시 서울특별시 B구의 대표자였던 구청장에게 이 사건 알고리즘을 적용한 C을 구축하여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고, 서울특별시 B구는 2009. 2.경 이 사건 알고리즘이 적용된 '주민의 구술신청(C)에 의한 전자민원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특별시 B구는 2009. 5.경 구술신청에 의한 전자민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시행하였다.

2) 서울특별시 B구는 위 구술신청에 의한 전자민원시스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B구 명의로 특허출원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8. 27. 발명의 명칭을 'F'으로, 출원인을 서울특별시 B구로, 발명자를 원고로 각 기재하여 특허출원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5. 6. 구술신청에 의한 전자민원시스템에 관하여 프로그램의 제호를 'C'으로, 저작자를 원고로, 창작일을 2009. 2. 4.로, 공표일을 2009. 2. 17.로 각 기재



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등록하였다(이하 서울특별시 B구에서 도입한 구술신청에 의한 전자민원시스템은 'C'으로, C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은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한다). 이후 서울특별시 B구는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12. 서울특별시 B구로 저작권 등록을 이전해주었다.

4) 원고는 2022. 7. 26. 서울특별시 B구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알고리즘을 특허출원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명서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 ②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저작권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2426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 11. 11.자 2023나2055253 결정), 원고와 서울특별시 B구가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민사 사건'이라 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등록된 저작권[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과 관련하여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원고는 2024. 12. 30. '서울고등법원결정에 따른 저작재산권 일부 이전(2024. 11. 30.)'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B구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



한 저작권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선행 민사 사건을 통해 2024. 11. 30.자로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중 1/2 지분을 이전받게 되었다. 피고의 소관 부처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는 2013년경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핵심 내용과 기능, 알고리즘, 개발결과물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프로그램인 'E'를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도입·보급하였는데 원고와 사전에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원고는 2007. 4.경 C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09. 8. 25.경 C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원고의 성과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1.경 'E'라는 이름으로 C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 내지는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고 2013.경 확대 적용하였던바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또는 (파)목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저작권법 제126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손해산정의 기간은 2022. 4. 8.부터 2025. 4. 7.까지로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항변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를 상대로 제기했던 선행 민사 사건에서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하여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행정안전부의 E 도입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의 취지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는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소스코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원고가 선행 민사 사건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이전받아 이를 등록한 2024. 12. 30.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가 원고의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은 행정안전부가 E를 도입한 시점인 2013. 3.경이다.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25. 4. 7.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라) C과 같은 구술 기반 전자민원 처리 방식은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C 내지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원고의 보호



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의 E는 '영업'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사실도 없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2)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지방자치법 제3조).

나. 판단

살피건대, 선행 민사 사건에서 원고와 서울특별시 B구 간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정 사항 중에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B구를 상대로 'C'와 관련하여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와 서울특별시 B구인 점, ② 선행 민사 사건이 제기되기 전에도 원고와 서울특별시 B구 사이에는 C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었고 결국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이러한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바, 당사자들은 모두 원고와 서울



특별시 B구 간에 부제소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점, ③ 선행 민사 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B구 외에 C을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④ 서울특별시 B구와 피고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거나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에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알고리즘의 구상을 완료하고 당시 서울특별시 B구 구청장에게 이 사건 알고리즘을 적용한 C을 구축하여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 사건 알고리즘을 토대로 C이 개발되었고, 피고 산하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11. 9. 1.경 신청서 없이 구술·전자서명만으로 민원 신청하는 E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E를 개발·도입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로 보호되는 이상 다른 저작물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문자적 요소인 코드, 즉 소스코드(source code)와 목적 코드(object code)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표현에 해당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의 E 시스템 내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물론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소스코드가 없어서 소스코드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동일 내지는 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E를 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는 C과 피고의 E 시스템은 그 구조 및 작동 방식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프로그램 내지는 시스템의 기능 및 그러한 기능을 실현하는 알고리즘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아이디어 또는 동작의 개념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에 해당하고,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표현에 해당한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구문, 구조, 변수명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의 E 시스템이 C과 동일한 기능을 유사한 구조 및 작동 방식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가 피고의 E 관련해서 제출한 증거는 모두 2011년 및 2013년 자료이다. 원고는 피고가 지금까지도 E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설령 피고가 E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했었고, 현재까지 E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2022년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 및 작동 방식에 의하여 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파)목 부정경쟁행위 성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과)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과)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B구는 C 도입으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내



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B구에서 2009년경 비용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D를 'B구 C 구축'을 위한 사업자로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식회사 D가 용역을 수행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알고리즘을 적용한 C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개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C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원고의 성과라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민원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양식에 자동 반영하고 서명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인바, 피고가 2013년경 'E'라는 이름으로 C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 내지는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도입·보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E라는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보급한 행위가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10

판사 이상수

판사 임성현